

#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이 지 훈\*

## <국문초록>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환경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는 2010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국 또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사건에 전문화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분석과 함께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의 도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환경법원의 도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사법부는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을 위한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과 넓은 범위의 구제 및 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의 국가녹색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을 분석하고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이루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긍정적인 시도들과 우리 환경소송의 한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최근 재조명되는 우리 환경법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주제어: 인도, 한국, 환경법, 환경법제, 인도대법원, 국가녹색재판소

- I. 서론
- II.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개선 노력
- III. 인도환경소송법제의 한국적 시사점
- IV. 결론

DOI: 10.18215/envlp.17..201609.101

\*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강사, 법학박사

## I. 서론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1987년 브란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소개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들에게 국내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환경과 관련한 국내 입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환경을 경제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인식하지 않아 환경정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인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경에 우선 가치를 둔 적극적인 환경법제의 변화를 모색해 온 서방국가 혹은 선진 국가에 비하면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경제적 개발 중심의 국가운영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위한 환경법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sup>2)</sup> 또한 개발도상국가는 종종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임의적이고 어울리지 않은 환경입법과 법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환경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에 기초한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 분쟁 해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의 내용에는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에 의한 행정조치나 분쟁조정이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 특히 환경 사건을 전담하는 환경법원에 의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보장, 오염피해의 사실 추정, 오염원인자의 입증책임 강화 등의 오염피해자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환경법제도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의의 이행을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국내환경법률과 국내환경법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환경 사건의 분쟁 해결과 보상 및 구제를 위해 다양한 환경소송법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은 환경사건을 기존 소송법제의 구분에 따라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의 기존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전자의 환경소송법제를 따르

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A/42/427, 1987;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Chap. I, Part 1, para. 42, 24면.

2) Bharat H. Desai,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Making Sense of Predicament of Developing Countries”, *World Focus*, May. 2013, 3-8면.

지 않는 다른 국가들은 기존법원에 ‘환경법정(Green Bench)’을 설치하여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단독부 혹은 합의부를 통해서 환경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뉴질랜드와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환경소송법제의 새로운 시도인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된 환경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환경법원이 가지는 환경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실제적 정당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인식하여 인도와 뉴질랜드의 사례와 유사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보이고 있다.<sup>3)</sup> 인도의 환경법원인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문제점인 과학적 불확실성과 환경소송의 지연 및 계류 등을 해결하고자 본래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요구되어지는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 분야의 전문재판관을 임명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과관계의 증명을 통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소송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원칙의 이행과 환경정의 실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sup>4)</sup>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의 요구 과정에 나타나는 한계점들은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들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환경소송법제 또한 환경소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환경법원의 도입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환경사건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기본권리, 환경사건 처리의 지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보상 및 구제 조치 등이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문제점으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사건들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광역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환경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존의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을 통한 환경소송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에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단체 및 집단소송을 위한 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환경법원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개선의 노력과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

3) Domenico Amirante, “Environmental Cour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liminary Reflections on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9 Issue 2, 2012, 448-453면.

4)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On the Quest for Green Courts in India”, *Journal of Court Innovation*, Vol. 3, 2010, 79-110면.

은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과정에 참  
 격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도 환경소송법제  
 변화의 출발점인 환경소송법제에 대한 인도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시작하여  
 환경소송법제의 새로운 쟁송기체인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인도환  
 경소송제도의 분석과 논의과정을 간략히 살펴 본 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소  
 송법제의 문제점들과 비교하여 한국 환경소송법제의 환경법원 도입가능성을 예측  
 해 보고자 한다.

## II.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개선 노력

인도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의 노력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인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환경소송법제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의 분석과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 논의의 출발점은 인도대법원의 독립적이고 적극적  
 인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5)</sup> 미국의 법원의 영향을 받아 사법  
 적극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인도대법원은 인도헌법의 제21조의 생명에 대한 권리<sup>6)</sup>  
 과 제48A조와 제51A조 (g)항<sup>7)</sup>의 환경에 대한 국가목표조항을 근거로 법률해석 된  
 환경기본권<sup>8)</sup>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의 국제 환경법  
 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오염원인자에 대한 피해

5) Domenico Amirante, 앞의 논문, 2012, 454-460면. 참고로 인도는 연방주의 국가임에도 불  
 구하고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구성하는 단일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  
 성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사법부는 미국연방법원의 영향을 받아 사법심사  
 (Judicial Review)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인도 헌법 제  
 32조에서 대법원의 신체구속영장(habeas corpus), 직무집행영장(mandamus), 금지명령  
 (prohibition), 권한개시소송(quo warranto), 이송명령(certiorari)을 포함하는 권한을 명시하  
 고 있으며 제226조에서 고등법원의 권한과 재량권을 명시하고 있다.

6) 인도헌법(2015),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Law and Justice), *the Constitution of India*, 2015년 11월 9일 100차 개정. 인도헌법 제21조에서 “어느 누구도 헌법에서 규정하  
 는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없다.”고  
 개인의 생명과 신체자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한다.

7) 인도헌법(2015) 제48A조는 “국가는 국가의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국가의 산림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1A조 (g)항에서 “국가는 산  
 림, 강, 호수 야생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살아있는 생물 위한 동  
 정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8) S. P. Sathe, “Judicial Activism: The Indian experience”,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9, No. 6, 2001, 30-43면.

책임과 사실입증의 책임(Onus of Proof)<sup>9)</sup>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으며 환경적 규제와 준수 이행 그리고 환경 분쟁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sup>10)</sup>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환경법제의 성장 속에서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환경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소송법제 변화의 타당성을 환경소송 판결을 통하여 확고히 주장하였다.

인도대법원은 ‘환경소송의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인도환경법제의 개선에 대한 첫번째 이유로 제시하였다. *M. C. Mehta vs. Union of India*(1986)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경오염, 생태적 훼손, 천연자원에 대한 환경 분쟁과 관련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에 기초되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건발생지에 관할을 둔 소송담당 판사와 두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법원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환경소송에서의 과학적 사실관계 추정과 입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환경법원의 설치를 제안하였다.<sup>11)</sup> 이러한 대법원의 제안에 대한 영향으로 인도 연방의회는 국가환경재판소법(NETA, National Environment Tribunal Act of 1995)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환경전문가의 편입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행정부의 나태함 또는 무기력함과 정치적인 의지(political will)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국가환경재판소는 설치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환경상소국법(NEAA Act,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 Act of 1997)<sup>12)</sup>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환경상소국은 환경영향평가에

9) 인도는 1984년에 발생한 보팔가스 누출사건 이후 진행된 아래와 같은 일련의 환경소송사건에서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오염원인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만약 오염원인자가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의 과학적 불확실성이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행위가 환경적인 피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입증의 책임(Onus of Proof)을 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하였다. *Vellore Citizens Welfare Forum vs. Union of India*(1996), AIR 1996 SC 2715; *Indian Council for Enviro. Legal Action vs. Union of India*(1996), 2 JT SCC 196; *M. C. Mehta vs. Kamal Nath*(1997), 1 SCC 388; *A.P. Pollution Control Board vs. Prof. M. V. Nayudu*(1999), AIR 1999 SC 140; *Narmada Bachao Andolan vs. Union of India*(1999), AIR 1999 SC 812. 등을 참고. 참고로 인도대법원 판례 검색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검색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available at <http://judis.nic.in/supremecourt/chejudis.asp>

10) 이지훈,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남아시아연구』, 제 22권, 제1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016, 113-116면; Alan Boyle, Patricia Birni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9, 276면;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앞의 논문, 2010, 90면; Nupur Chowdhury, “Sustainable Development as Environmental Justi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51, Issue No. 26-27, 2016, 87면.

11) M.C. Mehta vs. Union of India(1986), 2 SCC 176, 202면.

12) 1997년 국가환경상소국법(NEAA Act,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 Act)

다른 행정조치의 변경에 대한 청구사건을 관할하고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 환경 운영, 환경법, 환경계획, 환경개발 등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재판관을 임명하였으며<sup>13)</sup> 비법관 출신의 전문가의 임명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인도환경보호법(1986)의 보호조치 규정에 따라 사업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 이행여부에 따른 지역적 제약 조치를 받은 산업’으로 규정된 제한적인 관할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sup>14)</sup> 인도대법원은 다른 여러 환경 사건에서도 환경법원의 도입과 환경 분야의 전문재판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sup>15)</sup>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M. V. Nayudu(1999)사건 판결에서도 소송 심리 절차에서의 환경학자와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가지는 이점을 강조하며 환경법원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16)</sup>

환경법제의 개선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또 다른 제안은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완화에 따른 사법접근성의 확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해결’이었다. 법률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수자 또는 약자들의 법률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법원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완화됨으로써 환경사건에서도 제3자나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에 의한 제기된 환경공익소송의 재판 청구가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도 가능해졌다.<sup>17)</sup> 이러한 환경소송에서의 사법접근성 확장의 결과, 소송당사자에게 넓게 열린 환경소송 청구 권한을 통한 제도적인 남용과 오용 그리고 인도법원과 행정당국의 업무적 부담 등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 될 정도로 인도법원에 접수된 환경사건에 대한 소송 신청 건수는 소송의 원고적격 완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

---

이 제정 된 후 국가환경상소국(NEAA)은 13년간 운영되다가 2010년 국가녹색재판소 설치 이후 폐지되었다.

- 13) 국가환경상소국법(Government of India), the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 Act, Act No, 22 of 1997 (1997. 3. 26), Act No. 22, para. 5. 참조.
- 14)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앞의 논문, 2010, 102-130면.
- 15) M. C. Mehta vs. Union of India(1986), 2 SCC 176; Indian Council for Environmental-Legal Action vs. Union of India(1996), 3 SCC 212;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Prof. M. V. Nayudu(1992), SCC 718;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Prof. M. V. Nayudu(2001), 2 SCC 62 과 같은 다수의 환경소송에서 인도대법원은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필요성과 환경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16)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Prof. M. V. Nayudu(1999), 2 SCC 140.
- 17) 고문현, “인도에서의 공익소송”,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1, 154면; Geetranjoy Sahu, “Implications of Indian Supreme Court's Innovations for Environmental Jurisprudence”, Law,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ournal, Vol. 4(1), 2008, 6면.

하여 인도법원은 환경소송업무처리에 대한 규모적인 한계를 호소하게 만들었다.<sup>18)</sup> 위와 같이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였던 환경오염원인자의 과실 책임에 대한 사실 관계 입증 과정에서의 과학적 전문가의 필요성과 환경소송에서의 사법부의 재량권의 남용과 오용을 줄이며 증가하는 환경소송업무의 부담을 해소 해 줄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도대법원은 환경법원의 설치 through 환경소송법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제 186차 인도법률위원회의 ‘환경법원 구성을 위한 제안 보고서’<sup>19)</sup>에서는 인도 대법원이 보여준 제안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토대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환경법원 구성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안하였다. 인도법률위원회의 제안 보고서에 의해 제시된 환경법원의 사법 접근성의 향상, 행정조치에 대한 항소재판관할, 민사법원과 동등한 사법기관의 지위 보장, 환경전문분야의 전문가의 구성과 임명 요건 등과 같은 환경소송법제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인도연방의회에서 논의되어졌다. 이 논의의 결과로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10월 28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 국가녹색재판소 중앙법정(Principal Bench of NGT)이 설치 된 후 2011년 9월 12일 중앙법정에 처음으로 접수된 ‘마하 라슈트라 지역 광물채굴사업의 환경적 승인과 관련한 사건’을 시작으로 국가녹색재판소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환경보호, 산림보호, 환경자원과 관련한 환경문제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사법기관이다. 인도 국가녹색재판소가 가지는 의미와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1심 재판과 항소재판의 권한을 가지며 상당한 넓은 범위의 환경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환경사건에 특화된 전문분야 법관과 전

18) 이지훈, 앞의 논문, 2016, 113-116면; G. N. Gill,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3), 2014, 188-189면; G. N. Gill,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Green Tribunal: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 6, No. 4, 2013, 1-2면.

19) Law Commission of India, “168th Report on Proposal to Constitute Environment Courts”, (2013.9); 인도법률위원회 제186차 보고서, “Proposal to Constitute Environment Courts”라는 주제로 기존 인도 환경재판소법의 문제와 환경소송법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뉴질랜드, 호주의 환경법원을 모델로 한 인도만의 환경법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총 170장의 분량의 법률보고서를 2003년 9월 23일 제출한다.

문관들이 재판관결에 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sup>20)</sup>

먼저,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제1심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국가녹색재판소의 제14절에서 “환경 관련한 법적권리 구제를 포함한 ‘중대한 환경문제(substantial question relating to environment)’에 대한 모든 민사사건과 국가녹색재판법 부속서 제1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법률<sup>21)</sup>의 집행과 환경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상 해석되어지는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같은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에서 발생한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인도 환경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sup>22)</sup> 또한 국가녹색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도대법원에 상소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sup>23)</sup> 녹색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명시한 ‘중대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동법률 제2(1)절 (m)항에서 법률적인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관한 소송청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환경법률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공익, 재산상·환경상 손해,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환경문제와 점오염원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발생한 환경문제를 ‘중대한 환경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 법인, 공공, 단체에 의한 환경소송청구를 보장하고 있다.<sup>24)</sup>

두 번째로, 가장 주목받는 국가녹색재판소의 특징인 전문판제도의 도입이다. 환경소송에서의 환경 전문 재판관의 필요성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듯이 인도 대법원과 인도법률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쟁점이었다. 국가녹색재판소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소송 심리과정에서 환경사건의 사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관(Judicial Member)과 기술·전문적인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Expert Member)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5)</sup> 또한 국가녹색재판소의 소장은 필요한 경

20)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앞의 논문, 2010, 104-109면.

21)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 (Ministry of Law and Justice: India),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ct*, 2010. available at [http://www.greentribunal.gov.in/NGT\\_ACTS.aspx](http://www.greentribunal.gov.in/NGT_ACTS.aspx);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The National Green Tribunal Act) 부속서(Schedule) 제1장에서 수질보호와 오염규제법(1974), 수질 보전과 오염규제에 따른 과세법(1977), 대기환경 보전과 오염규제법(1981), 산림보호법(1980), 환경보호법(1986), 공적책임보험법(1991), 생물다양성법(2002)의 7개 환경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

22) G. N. Gill, 앞의 논문, 2014, 189-202면; Nupur Chowdhury, 앞의 논문, 2016, 85-87면.

23)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22절.

24)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2(1)절 (m)항.

우, 재판소가 처리 중에 있는 환경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건 심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녹색재판소는 국가녹색재판소 설치 이전, 환경사건을 관할하던 기존 인도법원에서 예상되었던 환경 기본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적 판단과 결정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오염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토대로 한 일률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한 환경 분쟁해결이 가능해 졌다.

마지막으로, 국가녹색재판소는 효과적인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녹색재판소법은 제18절에서 “지속적인 신체적 피해의 당사자, 재산상 피해를 받은 재산소유자, 환경적 피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사망자의 법정대리인, 재산상 피해 당사자와 사망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법률대리인, 피해를 입은 단체나 기구는 환경 소송의 당사자로서 중대한 환경문제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녹색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체나 제3자의 청구에 의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sup>27)</sup> 이 규정은 국가녹색재판소 설치 이전에 급증하는 환경소송사건에 대한 인도 상위법원의 소송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현된 조항이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순회법정(Circuit Bench)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sup>28)</sup>

### III. 인도 환경소송법제의 한국적 시사점

#### 1. 환경기본권의 관할범위

우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환경에 관한 권리의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sup>29)</sup>을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거나 환경소송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25)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5(1)절.

26)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4(2)절.

27)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8절.

28)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은 제186차 인도법률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안한 각 지역마다의 재판소 설치를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지 않다. 다만 지역법정의 재판 관할지를 이동하면서 청구된 환경사건을 심리하는 ‘순회법정(Circuit Bench)제도’를 갖추고 있다.

29)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

우리 대법원에서는 최근 들어 점차 환경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원고적격 발생의 근거법률은 헌법상의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개별 법률로 해석하고 있으며 헌법 제35조 상의 환경권조항에 직접 근거하여 원고적격을 발생시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sup>30)</sup> 이는 우리 환경소송의 환경 쟁송이 인간 그 자체 보다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및 인간의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시민법원리가 지배하는 전통적인 환경 쟁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sup>31)</sup>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와 달리 주관적인 환경소송과 객관적인 환경소송 모두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발생의 근거법률을 인도헌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관련한 지금의 인도헌법의 조항은 1976년 42차 헌법 개정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었다.<sup>32)</sup> 헌법의 개정 이후 인도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의무와 국가의 환경책임을 언급하는 이들 두 조항을 인도 헌법에 편입하게 된다. 새로 편입된 인도헌법 제48A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국가의 산림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51A조 (g)항에서는 “인도 국민은 산림, 강, 호수, 야생동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환경관련 소송에서 인도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강제되어지는 환경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두 조항들은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한 인도헌법 제21조과 함께 대법

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30) 고문현·안태용,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독인기본권 제20조a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3권, 숭실대 법학연구소, 2015, 19-21면; 청주 지방법원 1998. 2. 26 제3민사부 판결 97카합613,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서울 고법 1997. 10. 30 선고 96구14472 판결과 같이 일부 하급법원 판례에서는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5.5 23 94마2218 결정과 같이 대법원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 승인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립되어함을 판시하며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환경권은 그 청구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1) 박지원, “환경소송에서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동아법학』, 제4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39면.
- 32) 인도는 1997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의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1976년 42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법률조항(제48A조 및 제51A조 (g)항)을 신설하였으며 인도 수질보호 및 오염규제법, 대기보호 및 오염규제법, 환경보호법, 야생동물 보호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원에 의해 환경의 권리와 의무로 법률 해석되어 왔다.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에서는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벗어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에 대한 주관적인 소송의 청구부터 심각한 산업재해로 인한 공공환경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소송의 청구 권리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환경권을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인 *Virender Gaur vs. State of Haryana*(1995)사건<sup>33)</sup>에서는 대법원의 환경권에 대한 법률해석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인도대법원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생명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생명권은 환경의 보호와 보전과 삶을 향유할 수 없는 대기, 물, 보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태학적 균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 행위와 행동은 환경오염으로 간주되며 환경적 오염, 생태적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은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에 이르는 행위로 간주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는 생명권의 일부분이며 건강한 환경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보장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정부와 주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 또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환경적 책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의 보호, 유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sup>34)</sup> 이렇게 헌법상의 생명기본권의 범위를 환경적 권리까지 확장한 환경기본권 조항과 인도헌법 제48A조와 제51A조 (g)항과 같은 환경에 대한 국가목표조항을 통해 국민의 주관적 권리와 국가의 환경적인 규범력이 강조한다.<sup>35)</sup> 또한 인도환경법제는 환경소송에서 생존권인 법 성격, 사회청원적인 법 성격, 제도 보장적인 법 성격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환경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sup>36)</sup> 따라서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는 인도헌법 제21조의 생명권과 제48A조 제51A조 (g)항의 환경보호의 의무에 근거한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환경권의 관할에 대한 법률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환경법제의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환경권에 직접

33) *Virender Gaur vs. State of Haryana*(1995), 2 SCC 577.

34) 위의 판례, 1995, 580-581면.

35) 고문현, 안태용, 앞의 논문, 2015, 25-26면; 이 글에서는 헌법상 환경에 대한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은 주관적인 권리 또는 소구가능성 등과 같은 세부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동시에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36) 홍성방, “환경기본권 - 한국헌법 제 35 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소고”, 『환경법연구』, 제22권, 한국환경법학회, 2000, 474-478면에서 제시하는 환경권에 대한 3가지의 학설 중 인도의 환경권은 두 번째 학설인 종합적인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근거한 환경소송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환경소송법제의 주관적인 소송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sup>37)</sup>

인도의 환경법원인 국가녹색재판소에서는 인도헌법 제21조에 따른 환경권의 법률적 해석에 근거한 환경 기본권에 대한 환경분쟁 및 환경적 손해의 보상·구제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과 환경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다.<sup>38)</sup> 그러나 환경 관련 형사사건은 재판관할에서 배제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소송법제는 전통적인 범영역 구분방식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민사사건은 민사법원, 환경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형사법원, 환경과 관련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재판을 관할하고 있어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와 같은 환경사건의 처리의 신속함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sup>39)</sup> 또한 우리 ‘환경분쟁 조정법’에서는 환경피해를 ①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환경피해, ②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안온방해가 원인인 환경피해, ③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의 환경피해 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개념적인 구분은 인도의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환경적 규정에 비하여 민사, 형사, 행정소송으로부터 환경소송의 재판관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sup>40)</sup> 이러한 구체적이지 못한 재판관할의 구분은 우리 환경법제의 변화에서 요구되어지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환경법원을 도입한다면 우리 환경법원의 재판관할은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와 같이 기존 환경소송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환경 관할 범위에서 발생한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2.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과 환경전문재판관의 도입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환경오염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다. 우리 환경소송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정도로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

37) 박지원, 앞의 논문, 2010, 136면.

38)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서문 참고.

39) 현준원, “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환경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125-126면.

40) 환경분쟁 조정법 (2015), 법률 제13602호, 제2조1호.

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피해 사실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 대해 개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sup>41)</sup>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보상과 구제가 미루어지고 있다.<sup>42)</sup>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의견에서 환경소송법제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sup>43)</sup> 한국의 소송법제에서는 피해자에게만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오염원인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환경소송의 입증전환에 대한 사례를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도 환경소송법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환경법의 일부로 적용된 사전예방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 등의 환경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아닌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발생한 오염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위해 하지 않았다는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오염원인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Narmada Bachao Andolan vs. Union of India*(2000)사건에서 인도대법원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과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와 정보들이 충분하지 못하여 환경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염피해와 가해행위가 무관하며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의 책임은 오염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가녹색재판소의 판례인 *Krishi Vigyan Arogya Sanstha v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Forests*(2011)사건에서는 화력발전계획의 환경적 승인과 오염 피해의 인과 관계 입증에 필요한 과학정보 수집이나 평가 과정은 국가녹색재판소가 담당해야 하나 차후에 발생 할 수 있는 화력발전계획의 환경적 위해와 방사능 노출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입증책임은 화력발전소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sup>44)</sup> 또한 우리에게 포스코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국가녹색재판소의 *Prafulla Samantray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11)사건에서도 오염원인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포스코는 오리사 주에

41)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66-67면.

42)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후... 4년간 피해배상 허송세월 제조 기업들은 천하태평”, 2015년 12월 6일자, 시사면.

43) The L, “개인vs.기업...소비자는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2016년 6월 28일자.

44) *Krishi Vigyan Arogya Sanstha & other v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Forests and others*(2011. 9. 20), NGT Appeal 7/2011.

서 진행 중인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당국의 환경적 제한조치에 불복하여 ‘자연적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natural justice)’<sup>45)</sup>에 근거한 행정조치 철회를 청구하였지만 국가녹색재판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하여 포스코에게 환경적인 피해가 야기 될 우려가 없다는 ‘환경적 명백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령하였다.<sup>46)</sup>

더불어 국가녹색재판소법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무과실의 원칙(principle of no fault)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어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sup>47)</sup> 국가녹색재판소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피해사고에 대해서 고의 혹은 과실의 입증 책임 없이도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책임을 부과하며 피해자들은 신속한 보상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녹색재판소 설치 이전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는 보팔가스 대참사와 텔리황산가스누출사건과 같은 마땅히 무과실원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 없이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환경피해사고에 대하여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의 원칙’의 적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 기존의 대법원의 합의부는 오염원인자의 입증책임을 증명에 따라 사전예방원칙의 원칙에 근거한 ‘엄격책임 혹은 절대책임(strict or absolute liability)’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인과관계가 증명된 후 피해자의 보상과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sup>48)</sup> 우리 환경법제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에서도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하기에 무책임할 정도로 단순하고 모호하다.<sup>49)</sup> 또한 일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

45)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 *supra* note 21, 제19(1)절 참고, 인도헌법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 (Principle of Natural Justice)에 대하여 제14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에서는 인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공평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22조는 인간 존엄성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조항으로서 국가녹색재판소는 이 두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자연정의와 판결에 치우침 없는 공평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

46) *Prafulla Samantray vs. Union of India and others* (POSCO Case), NGT Application No. 8/2011.

47)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 *supra* note 21, 제17(3)절.

48)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앞의 논문, 2010, 108-109면.

49)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142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명확한 손해배상을 위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책임의 제정을 위해서는 무과실책임, 면책규정, 인과관계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입법 제정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sup>50)</sup> 따라서 우리 환경법제가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사고에서의 무과실원칙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추가되는 입법들의 난립과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국가녹색재판소와 같은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환경법원의 도입으로 환경오염피해자와 환경오염원인자는 불확실성을 가진 사실인과관계의 과학적인 입증을 위한 변호사의 조언뿐만 아니라 국가녹색재판소 자체에서 제공되는 전문가의 의한 조언을 구하여 환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1)</sup> 이러한 국가녹색재판소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국가재판소의 특수한 규정 중 하나인 환경사건 판결과정에서의 비법관 출신의 전문관(Expert Member)의 편입이다. 국가녹색재판소는 자체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필요한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사법적 결정을 담당하는 법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관을 소송 판결 과정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녹색재판소의 재판관은 인도대법원에서 판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혹은 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한다.<sup>52)</sup>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전문관은 생명과학, 물리과학, 공학 등 전문분야의 전문 학위를 갖춘 자로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연구기관에서 5년의 실무를 포함한 15년 이상의 환경 관련 행정업무경험이 있는 자 만을 임명하고 있다.<sup>53)</sup> 따라서 환경소송에서 국가녹색재판소는 자체에서 제공하는 전문관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필요한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이 가능하다.<sup>54)</sup>

우리 환경소송에서도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과학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경우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과학적 증명에 대한 이의가 일어날 때마다

50)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모색”,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 123-173면.

51) 인도법률위원회 제186차 보고서, *supra* note 19, 8-9면.

52)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5(1)절.

53)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5(2)절.

54) G. N. Gill,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xpert Members”,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5, Issue 01, 2016, 188-191면.

별도의 환경전문가가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건의 결정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원은 종종 전혀 다른 판결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 설치 이후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소송당사자들의 외부적인 비용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다.<sup>55)</sup> 국가녹색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6개월 기한 안에 결정하는 신속한 처리로 인도 환경소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소송사건의 계류 및 지연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sup>56)</sup> 또한 국가녹색재판소는 전문관의 도입으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법률해석의 균일성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한 환경사건에서도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3. 원고적격의 완화와 사법 접근성 보장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완화의 고민은 비단 우리 환경소송법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 환경관련 사건을 통해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소송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피해 집단 전체에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는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sup>57)</sup>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국제협약인 오루스 협약(Aarhus Convention)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유럽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미국 또한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sup>58)</sup> 이러한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 단체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환경구제법을 제정하였다.<sup>59)</sup>

---

55) Michael G. Faure and A. V. Raja,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Determining the Key Variables”,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1, No. 2, 2010, 286-288면.

56) G. N. Gill,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16(3), 2014, 188면.

57) 서울신문,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2016년 7월 26일자, 정치면.

58) 김현준, “환경사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35-138면.

59)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한

인도의 경우도 과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당한 당사자만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에 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를 입지 않는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었으며 인도 민사소송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였다. 공공에 대한 위해가 형사상 불법행위에 이르는 환경오염의 경우에만 인도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었다.<sup>60)</sup> *People's Union for Democratic Rights vs. Union of India*(1982)사건<sup>61)</sup>과 같이 “제 3자의 의한 문서 형식이나 그 외 형식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진 사안을 법원은 중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의 완화를 통해 인도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고 그 동안 법률 구제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 및 소수자의 권익까지도 보호 할 있게 됨으로서 공익소송을 통한 환경소송의 원고적격(*Locus Standi*)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sup>62)</sup> 또한 이러한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의 완화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 및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환경공익소송(*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및 사회집단소송(*Social Action Litigation*)등의 새로운 형태의 환경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sup>63)</sup>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 또한 많은 환경사건에서 이러한 폭 넓은 원고적격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 예로 이러한 환경소송의 원고자격 완화에 힘입어 인도 대법원의 대표적인 환경소송사건인 *M. C. Mehta vs. Union of India*사건과 그 일련 환경사건의 소송청구인으로 유명한 환경변호사 *M. C. Mehta*는 타지마할과 주변 거주민들 환경적 피해 사건, 대중교통의 CNG 전환을 위한 대기오염 피해 사건 등 다수 환경사건에서 제3자의 청구에 의한 환경공익소송을 진행하였다.<sup>64)</sup> 인도

국환경법학회, 2012, 462면; 이 글에서 독일의 환경 구제법 제2조에서는 환경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권리구제의 범위에 있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권리 침해규정을 혼용함으로써 유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환경구제법의 개정을 통해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고 서술하며 유럽의 환경단체소송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60) 인도 민법(*Civil Procedure Code*) 91조에서는 공공 불법 행위와 위해에 대한 소송 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Code of Criminal Procedure*)의 133조는 형사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공적불법방해에 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61) *People's Union for Democratic Rights vs. Union of India*(1982), 3 SCC 235.

62) 이지훈, 앞의 논문, 2016, 117면.

63) U. Baxi, “Taking Sufferings Seriously: Social Action Litigation and the Supreme Cour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view*, Vol. 29, 1982, 37-49면.

64) 환경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완화로 인하여 환경변호사 *M. C. Mehta*는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04), 2 SCR 504; *M. C. Mehta vs. Union of*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도 역시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녹색재판소는 수질법, 대기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생물다양성법 등의 제정된 환경법률에 따른 중대한 환경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1심 재판과 행정당국의 결정, 지시, 명령에 대한 항소재판에서 자연인, 법인 및 법인 대표, 대리인, 기구, 단체 등의 소송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환경법제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제3자와 단체에 의한 환경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인도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통한 사법접근성의 향상은 개인적인 법적권리 구제에 대한 소송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자체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객관적인 측면의 소송도 가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쟁송구조를 마련하게 하였다.

반면 우리 환경소송법제는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인 소송에 그 중심이 모아져 있으며 객관적 소송은 법률상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sup>66)</sup> 현행 한국의 환경소송법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불문하고 인간 중심의 주관적인 쟁송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직접적인 법률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 한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있다.<sup>67)</sup> 따라서 환경소송과 관련한 우리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당사자가 하나의 법인인 경우는 제소의 권한을 가지나 다수 당사자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행정소송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소권한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해결 할 만 한 직접적인 이익을 가진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sup>68)</sup> 이처럼 오로지 자신의 권익이 침해 되는 경우에만 환경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행정법규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행정 소송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한 행정청이 아무리 위법한 행정작용을 하여도 그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

*India and others*(2002), 2 SCR 963;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7), 1 SCC 395;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6), 2 SCC 176 등과 같은 일련의 환경 소송들이 잇따라 진행하였다.

65)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2(1)절 (f)항과 제18절 참고.

66) 송동수, 앞의 논문, 2012, 471-472면.

67) 박지원, 앞의 논문, 2010, 139면.

68)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2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79-82면 참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도의 국가녹색재판소는 민사법원에 상응한 권한과 지위<sup>69)</su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 이후 민사법원은 국가녹색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재판관할을 가지지 못하며 국가녹색재판소가 내린 환경의 피해에 대한 복구, 보상, 구제의 조치에 대한 항소재판 혹은 행정소송도 관할하지 못한다.<sup>70)</sup>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구속되는 것과 달리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인 국가녹색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구속받지 않고 인도헌법에 따른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관할한다.<sup>71)</sup> 이 원칙에 따라 소송당사자는 환경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울리는 적절한 절차 없이 결정된 행정기관 및 준사법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판례로 타밀나두 주 오염규제국은 원고의 정비공장이 오염규제국의 지도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밀나두 주 전력국으로 하여금 원고의 정비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의 중지를 명령하였다. 국가녹색재판소는 피고인 오염규제국은 원고에게 행정조치에 관한 직접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환경적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심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환경피해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오염규제국의 공장폐쇄조치 취소와 원고 정비공장의 전력공급복구를 결정하였다.<sup>72)</sup> 이와 같이 인도의 환경법원은 환경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소송이 가능하다.

69)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9(4)절.

70)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29(1)절과 제29(2)절.

71)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9(1)절, 인도헌법의 자연적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Natural Justice)은 인도 제헌헌법 당시 미국헌법의 ‘적법절차(due process)’영향을 받아 21조(생명과 인신보호)의 기본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을 위해 인도헌법 제 14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할 권리와 연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1978년 대법원의 *Maneka Gandhi vs. Union of India* 사건 판결이후 인도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에 입각한 사법적 법률제량권을 바탕으로 인도 헌법 제21조의 기본권의 법률해석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1980년대 이후 환경권을 헌법 제21조의 권리의 일부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법률해석의 범위 확장으로 인도 환경소송법제에서도 환경권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였으며 현재 인도 환경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국가녹색재판소 역시 민사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아닌 헌법에 근거한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환경 소송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

72) *M/S Om Sakthi Engineering Works vs. Tamil Nadu Pcb. and others*(2012), NGT Appeal No. 11/2011.

환경소송의 사법접근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넓은 분포의 지역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앙법정(Principal Bench)을 델리에 두고 인도의 전 지역을 서부, 동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4개의 지역법정(Zonal Bench)을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법의 접근성을 위하여 독특한 순회법정제도를 두고 있다. 순회법정은 소송당사자의 법원으로서의 이동성을 감안하여 환경 소송의 처리 지연을 막고 중앙법정이나 지역법정이 업무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소한 환경쟁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제도이다.<sup>73)</sup> 다시 말하자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순회법정은 소송당사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해결하는 쟁송구조라 할 수 있다.<sup>74)</sup> 이러한 국가녹색재판소의 지역법정과 순회법정은 환경소송의 양적 증가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적인 확충이 요청되고 있으며 환경 소송의 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기존 인도 상위법원의 환경 소송의 업무적인 부담과 외부적인 소송비용을 경감하며 환경소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국가녹색재판소는 제1심 재판과 항소재판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기한을 인정하면서 소송당사자의 사법접근성을 도모하고 있다.<sup>75)</sup> 이와 관련하여 히마찰프라데쉬 주의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산림허가와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녹색재판소는 항소인들이 법정으로 이동하기에 거리상 먼 오지에 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높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고 특히 몬순시기의 산사태로 인하여 이동이 어렵다는 교통과 통신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30일간의 소송기한을 추가적으로 허락한 바 있다.<sup>76)</sup> 따라서 차후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환경법원의 도입의 경우에도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환경 소송 법률 제도상의 추가적인 고려

73) 순회법정은 국가녹색재판소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지역법정의 재판관이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순회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법정으로 현재 인도의 심라, 실링, 조드푸르, 코치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74) G. N. Gill, 앞의 논문, 2013, 32면.

75)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4(3)절, 제16절, 제22절 참고. 국가녹색재판소는 분쟁에 대한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 1심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소의 결정, 명령, 지시의 판결송달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판결 불복하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다. 소송당사자가 소송기간을 지키지 못한 충분한 이유를 제출한다면 제 1심 재판과 항소 재판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60일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재판소는 추가적인 기한을 허락 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상고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상고 기한을 허락 할 수 있다.

76) *Sanrakshan Sangarsh Samiti Lippa vs. Union of India(2011)*, NGT Order 15th December, 2011.

사항들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행정조치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사법적 재량권

인도 상위법원은 환경관련 소송에서 사법적극주의적인 태도로 인도헌법에 규정된 법원의 재량권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지시, 명령, 영장발부의 권한을 가지며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개입 없이 환경 분쟁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직접적인 해결을 하여 왔다.<sup>77)</sup> 인도헌법 32조에서는 “법원은 직무집행영장, 금지명령, 권한개시, 이송명령을 포함하는 지시, 명령, 영장의 권한을 가지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걸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도헌법 제226조에서는 고등법원의 지시, 명령, 영장의 권한에 대한 사법적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다.<sup>78)</sup> 결과적으로 인도법원은 환경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헌법 제32조와 제226조에 근거한 강행적인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도법원의 권한은 환경소송을 생존권적 법적 성격에서 환경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하기 위한 청원적인 법적성격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국가녹색재판소에서 인도헌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청원에 대한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중앙정부(Union Government), 인도 주 정부(State Government),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중앙환경오염규제국(CPCB,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등과 같은 환경 관련 행정기관이 청구하는 환경 분쟁 해결과 보상 및 구제조치에 대한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sup>79)</sup> 또한 이에 따른 판결과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환경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와 지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 헌법상의 환경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중대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민사사건에 대한 재량적인 사법적 판결과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 명시하는 7개 환경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관할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대한 항소재판을 통해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sup>80)</sup>

77) Faure, Michael G. and A. V. Raja, 앞의 논문, 2010, 264면.

78) 인도헌법(2015), 제32조와 제226조;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Law and Justice), *the Constitution of India*, 2015, 18면과 112-114면.

79)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8(f)절 참고.

80)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4(1)절, 부속서 1장 (Schedule I). 참고, 일부에서는 국가녹색재판소의 특수한 사법체계를 인정하여 준사법기관 (Quasi-judicial Body)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G. N. Gill, 앞의 논문. 2013, 35면; Michael G. Faure and

이러한 기능적 역할 덕분에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 및 구제와 판결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이행이 가능하다.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환경과 관련한 개인상 피해, 재산상 피해, 환경적 피해의 복구를 포함한 모든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구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지급에 대하여 공적책임보증법(Public Liability Insurance Act, 2002)에 따라 보증하고 있다. 그 보상 및 구제의 범위에 대하여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는 “① 환경피해로 인한 사망, 영구장애, 일부장애, 부상 및 질병, ② 환경피해자의 영구장애, 일시장애, 전신장애로 인한 상실급여, ③ 부상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적 지출, ④ 개인재산상의 손해비용, ⑤ 피해자의 구제, 구호, 회복을 위한 정부와 주정부의 지출, ⑥ 환경적 피해보상과 질적 복구를 포함한 행정 및 법적 조치로 발생하는 정부의 지출, ⑦ 환경적 피해 행위로 인한 정부와 권한기관의 손실, ⑧ 동물생태계의 위해, 훼손 및 파괴에 대한 손해 (목축동물, 수상 양식 동물 포함), ⑨ 식물생태계의 위해, 훼손 및 파괴에 대한 손해 (농작물 포함), ⑩ 토지, 대기, 수질, 생태계의 환경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⑪ 개인 재산 외 다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실, ⑫ 사업과 고용에 대한 손실, ⑬ 위험물 취급과 연관되거나 발생한 보상 및 구제요구”를 규정하고 있다.<sup>81)</sup> 국가녹색재판소는 특히 환경오염피해에서 발생한 개인의 사망, 부상 혹은 개인의 재산상 및 환경적 손해에 대한 경우는 보상과 구제의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sup>82)</sup> 한 가지의 환경오염원이 아닌 여러 환경오염원에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구제의 책임의 범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평한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83)</sup> 이러한 폭 넓은 보상 및 구제의 범위와 함께 오염피해자 중심의 보상 및 구제 신청에 대한 기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상 및 구제에 대한 신청기간은 결정통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신청 못한 경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녹색재판소는 추가적인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sup>84)</sup> 하지만 최근 산업 발전으로 환경피해의 주요오염원이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 등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물질에 의한 환경피해가 상당

A. V. Raja, 앞의 논문, 2010, 279면; Swapan Kumar Patra and V. V. krishna(2015),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Indian Journal of Geo-Marine Sciences, Vol. 44, No. 4, 2015, 1-2면 참고.

81)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부속서 2장(Schedule II).

82)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7(1)절.

83)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7(2)절.

84)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제15(3)절.

한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거나 피해결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녹색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및 구제신청 기간인 5년 보다는 긴 장기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도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환경법원 도입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sup>85)</sup>

또한 국가녹색재판소의 보상과 구제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위하여 결정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은 3년의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루피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며 계속적인 불이행에 일일 2만 5천 루피의 벌금이 가산된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는 1억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일일 1십만 루피의 가산금이 부과된다.<sup>86)</sup> 이러한 국가녹색재판소의 처벌은 오염원인자인 경우는 높은 수준의 책임한도범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국가녹색재판소법의 오염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강력한 보상 및 구제 규정과 처벌규정은 국가녹색재판소의 판결과 판결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환경법제에서도 올해부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동 법률의 제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sup>87)</sup> 하지만 이 법률은 오염피해자의 적극적인 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대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의 한도 설정, 인과관계의 추정 배제 등의 사업자에 대한 배려조항을 규정하고 있다.<sup>88)</sup> 따라서 대부분 환경사건의 오염원인자인 사업자에게 절대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엄격하지 못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이 법률이 이행과정에서 얼마나 큰 실효성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선진국에 선례가 될 만한 매우 진보적인 규정인 구제급여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sup>89)</sup> 이 구제급여

85)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앞의 논문, 2010, 107-108면.

86) 참고로 2016년 8월 환율시세에 따르면 1루피는 원화 16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1천만 루피는 원화 약 1억 6천만원, 1억 루피는 원화 약 16억원에 해당한다.

8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 법률 제12949호, 제1조.

88)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141-175면.

89) 김홍균, 앞의 논문, 2015, 145-148면.

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의 환경피해자의 영구장애, 일시장애, 전신장애로 인한 상실급여와 유사한 규정으로 여겨진다.<sup>90)</sup>

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피해, 자연자원의 훼손 등 자연환경피해의 복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구제나 복구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통한 환경피해의 보상 및 배상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동 법률은 법체계 접근방식이 다른 형태를 하나의 법에서 다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다 판단하여 소유권 침해 등 개인적 이익 침해를 수반한 자연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책임배상부분을 제한하고 있다.<sup>91)</sup> 더불어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오염피해자의 배상조치의 이행에 있어서도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구속할 만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강력한 배상책임의 이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sup>92)</sup> 그러므로 환경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조치와 강력한 보상 및 구제 조치의 이행이 가능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와 유사한 환경법원의 도입이 우리 환경소송법제에서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V. 결론

지금까지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를 설치하기까지 인도의 어떠한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인도 환경법제는 어떠한 이유로 환경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지를 분석한 후 우리 환경 소송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환경법원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인도의 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구성되어진 인도 환경소송법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환경 사건들을 통해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베이비파우더 사건, 폭스바겐 디젤 차량 이슈, 가습기 살균

90)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2010), 부속서 2장 (Schedule II), (c)항 참고.

9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법률 제12949호, 제14조 참고.

9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의 제6장에 ‘벌칙’에서는 부정구제급여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을 정보제공과 열람과 환경책임보호 가입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피해자의 배상의 조치에 확실한 이행에 기반을 둔 처벌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제 피해 등의 환경 사건을 통하여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입증책임의 문제와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에 관한 법률 발의도 추진하려고 있다.<sup>93)</sup> 일부에서는 환경소송법제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법원 혹은 환경 분쟁 관련 독립기관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환경법원을 이미 5년 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인도의 환경법원은 신속하며 효과적인 사건처리의 운영능력 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역할도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환경법원의 활약상은 최근 디젤 차량에 대한 등록 및 사용금지 결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인도대법원과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의 반향에 대하여 매우 기민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국가녹색재판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높다는 이유로 델리와 그 수도권 주변에서의 2000cc이상 디젤 차량의 전면적인 차량 등록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인도환경산림부에 명령하였다. 또한 국가녹색재판소는 올해 안에 주요 11개 도시에서의 10년 이상 된 디젤 차량과 15년 이상 된 가솔린 차량의 차량등록취소를 위한 강력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정부당국에게 지시할 것으로 분석된다.<sup>94)</sup>

이와 같이 환경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인도국가녹색재판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는 198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환경대참사를 계기로 지금의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고민하고 있는 원고적격의 완화, 무과실책임의 원칙, 오염원인자의 입증의 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소송의 지연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년간의 인도사법부 노력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결과물이다.

인도 환경소송법제가 고민하였던 환경소송의 한계점과 현재 우리 환경소송법제가 고민하는 문제점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환경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환경소송의 원고 적격을 완화하여 공익소송이나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환경법의 사전예방원칙과 오염부담원칙을 적용한 절대과실원칙과 무과실원칙에 따른 오염원인자의 환경책임

93) 매일신간, “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2016년 7월 26일자, 정치면.

94) NDTV, “National Green Tribunal Ban on Diesel Cars May Be Extended to 11 Other Cities”, 2016 5월 30일자 Car and Bike면; The Indian Express, “Ban on Diesel Cars is Corporate Death Penalty: Toyota tells NGT”, 2016년 7월 28일자 Business면.

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피해자 중심의 입증 책임을 오염원인자 중심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환경법제에 환경재판관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부담과 사건처리의 시간적 지연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권리구제, 보상, 배상에 대한 구체적이며 강력한 사법 주도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환경소송법제는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환경적 규제와 준수이행의 흐름에 적절히 합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면한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에 대하여 임시방편의 입법적 변화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구제법의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단체소송법 혹은 집단소송법제도의 법안 제정, 환경법의 무과실규정의 개정 등의 환경법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임기응변적인 법률적 제안들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환경소송법제의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총체적인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환경법원의 도입이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도의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우리의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도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 도입 과정에 보여준 총체적인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처럼 우리 환경소송법제 또한 환경법원의 도입으로 현재 고민하는 환경소송의 한계점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경제적 발전에만 지우친 환경오염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려보다는 환경피해자의 환경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경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적절한 보상 및 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의 실현도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는 환경법원의 도입이 우리 환경소송법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투고일자 2016.08.27, 심사일자 2016.09.19, 게재확정일자 2016.09.20

##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문현, “인도에서의 공익소송”,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1. 9
- 고문현·안태용,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독인기본권 제20조a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3권, 숭실대 법학연구소, 2015. 7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김현준, “환경사범엑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8
- 더 엘, “개인vs기업...소비자는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2016년 6월 28일자. 매일신간, “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2016년 7월 26일자, 정치면
- 박지원, “환경소송에서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동아법학』, 제4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 매일신간, “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2016년 7월 26일자, 정치면
- 서울신문,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2016년 7월 26일자, 정치면
-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후... 4년간 피해배상 허송세월 제조 기업들은 천하태평”, 2015년 12월 6일자, 시사면
-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4
- 이지훈,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남아시아연구』, 제 22권, 제1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016
- 이현욱,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적용”,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 이형석,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2권, 제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8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 모색“, 『환경법 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4.3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2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8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2015), 법률 제13602호, 시행일 2015.12.2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 법률 제12949호, 시행일 2016.07.01.

현준원, “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환경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11

홍성방, “환경기본권 - 한국헌법 제35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소고“, 『환경법연구』, 제22권, 한국환경법학회, 2000

[외국문헌]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M. V. Nayudu*(1999), 2 SCC 140

Alan Boyle, Patricia Birni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9

Bharat H. Desai and Balraj Sidhu, “On the Quest for Green Courts in India”, *Journal of Court Innovation*, Vol. 3, 2010

Bharat H. Desai,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Making Sense of Predicament of Developing Countries”, *World Focus*, May. 2013

Domenico Amirante, “Environmental Cour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liminary Reflections on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9, Issue 2, 2012

G. N. Gill,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Green Tribunal: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 6, No. 4, 2013

G. N. Gill,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xpert Members”,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5, Issue 01, 2016

G. N. Gill,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aw*

- Review*, Vol. 16(3), 2014
- Geetranjoy Sahu, “Implications of Indian Supreme Court’s Innovations for Environmental Jurisprudence”, *Law,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ournal*, Vol. 4(1), 2008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Law and Justice), *the Constitution of India*, 100th Amendment Act, 2015. 9. 11
- Government of India, *the National Environment Tribunal Act*, Act No.27 of 1995, (1995. 7. 19)
- Government of India, *the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 Act*, Act No, 22 of 1997 (1997. 3. 26)
- Indian Council for Environmental-Legal Action vs. Union of India*(1996) 3 SCC 212
- Krishi Vigyan Arogya Sanstha & others v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Forests and others*(2011.09.20), NGT Appeal 7/2011
-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6), 2 SCC 176
-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7), 1 SCC 395
-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02), 2 SCR 963
-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04), 2 SCR 504
- M/S Om Sakthi Engineering Works vs. Tamil Nadu Pcb and others* (2012), NGT Appeal No. 11/2011
- Michael G. Faure and A. V. Raja,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Determining the Key Variables”,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1, No. 2, 2010
- Ministry of Law and Justice (India),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ct*, 2010
- Narmada Bachao Andolan vs. Union of India*(2000), 10 SCC 664
- NDTV, “National Green Tribunal Ban on Diesel Cars May Be Extended to 11 Other Cities”, 2016. 5. 30
- Nupur Chowdhury, “Sustainable Development as Environmental Justi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51, Issue No. 26-27, 25 Jun, 2016
- People's Union for Democratic Rights vs. Union of India*(1982), 3 SCC 235.
- P. M. Bakshi, *Constitution of India*, Universal Law Publishing: New Delhi, 2014
- Prafulla Samantray vs. Union of India and others(POSCO Case)*, NGT Application

No. 8/2011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S. P. Sathe, “Judicial Activism: The Indian experience”,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9, No. 6, 2001

Swapan Kumar Patra and V. V. Krishna(2015),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Indian Journal of Geo-Marine Sciences, Vol. 44, No. 4, 2015

*Sanrakshan Sangarsh Samiti Lippa vs. Union of India*(2011), NGT Order 15th December, 2011

The Indian Express, “Ban on Diesel Cars is Corporate Death Penalty: Toyota tells NGT”, 2016. 7. 28

U. Baxi, “Taking Sufferings Seriously : Social Action Litigation and the Supreme Cour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view*, Vol. 29, 1982

*Virender Gaur vs. State of Haryana*(1995), 2 SCC 577

<Abstract>

**Indian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Lee, Ji-hoon<sup>\*</sup>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court has become crucial consid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oth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In this perspective, Ind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Green Tribunal (NGT) on 2010.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ed South Korea, the current momentum is moving towards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to deal with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effort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context with analyzing the Korea'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urt in South Korea. The Indian higher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has played proactive-role for setting-up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suggested National Green Tribunal which provides effective and expeditious disposal of cases relating environment and broad relief and compensation for citizens. This article observes critical role of the National Green Tribunal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examining positive initiatives of Indian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Indian Supreme Court and National Green Tribunal compared to the current limitations of Korean

---

<sup>\*</sup> Lecturer, Department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environmental litigat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Green Tribunal’ would be very useful implication to satisfy the growing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Key words: India, South Korea,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Jurisprudence, Indian Supreme Court, National Green Tribunal
---